						시 민
		주무관	건축안전팀장	건축기획과장	주택공급정책관	주택정책실장
문서번호	건축기획과-10329	<i>협 조</i>				
결재일자	2012.6.20.					
공개여부	대시민공개					
방침번호						

-서울시 건축물 내진성능 자기점검 시스템-운영 및 기능개선사업 계획

2012. 6.

주택정책실 (건축기획과)

▶사전 검토항목

:::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'무 ■'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

검토항목		검	토 여 부 (■ 표시)		
	• 시	민 :	유 🗆 (무■	
시 민 참 여	• 이 해 당 사	자 :	유 🗆 (무■	
고 려 사 항	● 전 문	가 :	유 ■ (2012.5.11 공청회 개최) 전문가 의견 청취	무 🗆	
	● 옴 브 즈	만 :	유 🗆 (무■	
	● 법 령 규	정 :	교통 🗌 환경 🗌 재해 🗌 기타 🗌	무■	
법 령 및 기 타	기	타 :	고용효과 □ 성인지 □ 균형인지 □		
고 려 사 항	취약계층 □ 장애인 □ 노동인지 □				
			갈등발생 가능성 □유지관리 비용 ■	무 🗆	
	● 중 앙 부	처 :	유 🗆 (무■	
타자원의활용	• 민 간 단	체 :	유 ■ (전문가 상담코너 신설) (구조/술사, 건축사 협회 협조)	무 🗆	
	• 기	업 :	유 🗆 (무■	
관계기관및	● 관 계 기	관 :	-자치구 담당지정 및 유 ■ (협조요청 예정 (2012.6)) -주거환경과 협의	무 🗆	
단체 협의	• 관 련 단	체 :	유 🗆 (무■	

-서울시 건축물 내진성능 자기점검 시스템-운영 및 기능개선사업 계획

『서울시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시스템』 **대시민 보급 확대 및 시민편의 이용환경 마련**, **서울시내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**를 유도하여 지진에 강한 서울을 만들고자 함

1. 추진배경

□ 그간 추진사항

- 2010. 02. 25 서울시 민간건축물 내진대책 추진 (부시장방침 제 호)
- 2010. 10. 08 서울시 건축물내진자가점검 시스템 구축 (2010.10~2012.2)
- 2012. 03~05 시범운영 및 공청회 개최 (자라 건축과 구조기술) 회 건축) 회의회
- 2012. 05. 25 대시민 보급 (서울시 홈페이지에 탑재)

※ 서울시 민간건축물 내진대책 추진 ['10.2.25, 부시장방침 제84호]

- 민간건축물 내진대책 필요 ⇒ **민간건축물 내진성능 정보제공**, 지진에 대한 경각심 및 내진보강 활성화 유도

※ 서울시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시스템 구축 ['10.10~'12.02]

- 주요기능
 - ① 시민 누구나 간단한 건축물 정보를 입력하여 건축물 내진성능을 가늠해 볼 수 있도록 개발한 홈페이지
 - ② 건축물 내진성능 평가, 표준건축물별 보강방법과 비용 제시

2. 2012년 시행계획

□ 시행방향

- ⇒ 시스템 시민편의 이용 환경 마련
 - 시민편의 **효율적 운영체계 마련**
 - 시민과의 Feeback을 통한 **시스템 기능개선 용역** ('12.6~12월)
- ⇒ 서울시 건축물 내진확보율 향상 및 지진에 강한 도시 서울 만들기
 - 건축주 내진보강시 지원제도 마련으로 활성화 유도

□ 시민편의 효율적 운영체계 마련



- 운영체계 업무분장
 - 서울시(건축기획과) :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, 시민과의 Feeback을 통한 시스템 기능개선 및 보급 확대
 - 자치구(건 축 과): 시민이 혼자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, 해당 자치구에 방문하여 담당자와 함께 이용하거나 전화문의시 응대
 - 민간전문가(구조기술사회, 건축사회 등) : 평가결과 안내 및 내진보강방법· 비용 상담

② 기능개선 고도화 용역 시행 (2012.6월 예정)

- 주요내용
- 웹페이지 디자인 개선 ⇒ 시민편의 및 사용성·접근성 향상
 - ① 디자인 개선 : 사용성 개선을 위한 그림(또는 애니매이션) 삽입
 - ② 매뉴 신설 (민가거추묵 내지보자 지원제도 아내 자치구 단

(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제도 안내, 자치구 담당자 및 전문가 정보 제공, 사용자 매뉴얼 제공 등)

- 건축물 변경내용(신축 등) 반영 ⇒ 평가결과 신뢰성 확보
 - ① 신규건축물 등 변경내용 반영 (연 1~2회)

구분	내용	속성	작업내역			
건축물대장	건축물정보	건물명주쇠건축물구죄용도명 등	건축물주소를 이용하여 위치정보 생성(좌표)			
지반DB	지반정보 및 좌표	지반정보/좌표정보				

○ 용역시행

- 계약방법 : 수의계약 (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5조제1항제4호바목 및 제5호)
- 수의계약 사유 : 시스템 개발(제조)한 상기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하여 기술·용역 진행하고자 함
- 계약업체 : KIT Valley(주)
- 소요예산 : 총 27백만원
- 예산과목 : 도시경관 및 시민생활불편요인 정비, 건축물 공공성 강화,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시스템 기능개선, 공공운영비 (100-201-02)
- 산출내역 : 붙임 내역서 참조

③ 건축주 내진보강시 지원 제도 마련

- 현 행 : 내진보강시 용적률 인센티브(10%) 제공 (서울시 건축조례)
- 향후 검토 : 법령개정 건의 및 관련부서 협조
 - 주택개량비용 융자 한도 확대 : 현 80% → 내진보강시 90~100% (주거환경과)
 - 내진보강시 지방세액 감면: 「서울시 시세조례」 개정건의 (재무국 세재과)

※ 내진성능보강 공사시 지방세액 감면 개정건의 (서울특별시 시세조례)

- ① 지진재해대책법 지방세 감면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으므로, 건축물 구조보강공사 시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「지방세 특례 제한법(행안부)」 또는 「서울특별시 시세 조례」 개정 건의
 - → 개정(안) 재산세 및 취득세 등 지방세 한시적(3년 이내) 감면
- ② (사례) 일본 내진화 지원제도
 - 주 택 : 보강공사비 가구당 30만엔(약 400만원) 지원
 - 기 타 : 보강공사비의 10% 소득세 감면, 고정자산세 2년간 1/2감면
- 내진성능보유 건축물 인증제 : 건축법 개정건의 (국토해양부)
 - ※ 내진성능보유인증제 시행 개정건의(건축법 시행령)
 - ① 신축건축물 건축물대장 기입 (건축법 시행령 제25조)
 - ② 기존 다중이용시설물(공연장, 전시시설, 종교시설 등)에 **내진성능 인증판** 설치 의무화 (건축법 시행령 제32조)

□ 향후계획

○ 2012. 6 ~ 7 자치구 직원 교육

구조기술사회 등 민간전문기관 협력체계 구축

○ 2012. 7 ~ 시스템 홍보 지속시행 (홍보책자 배포 등) 내진보강시 지워 제도 관련부서 협조 및 개정건의

※ 자치구 직원 교육 계획 (추후 교육일정 공문시행 예정)

- ① 내진점검 시스템 담당공무원 지정 및 사용법 교육 (7.6 예정)
- ② 인ㆍ허가 담당공무원 구조안전기준 및 내진설계 필요성에 대한 교육 (7.13 예정)

- 붙임 1) 관계법령 1부.
 - 2) 내역서 1부. 끝.

붙임1. 관계법령 정리

1.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25조 (수의계약에 할 수 있는 경우)

- 4. 특정인의 기술·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·구조·품질·성능·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
- 5. 추정가격(임차나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)이 **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· 구매·용역 계약** 또는 그 밖의 계약의 경우

2. 지진재해대책법

지진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지진재해대책법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조의2(민간소유 건축물의 제11조의2(보험료율 차등 적용 제16조의2 (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신청) 기관) 내진보강 지원)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"대통령 ① 법 제16조의2에 따라 **내진** ①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단체 보강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 기존의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나 기관"이란 「보험업법」 제4 지 제1호서식의 내진보강 지원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하여 지 조제1항에 따라 보험업의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방자치단체의 장은 「**지방세특** 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176조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한 례제한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에 따른 보험료율 산출기관을 건축물 내진성능 확인서를 첨부하여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, 말한다.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수·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단체나 기관 등은 지진재해 관 [본조신설 2011.11.30] 련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1. 「기술사법」 제6조에 따라 있다. 건축구조기술사시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내진보강 지원 2. 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절차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 특별법 1 제9조에 따른 안전진 한다. 단전문기관으로서 건축구조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안전진단전문기관 ③ 「건축법」에 따른 건축물 중 제14조제1항에 따른 내진설 3. 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특별법 시 25조에 따른 한국시 건축물로서 신축 시 내진설계 설안전공단 를 적용한 민간소유 건축물에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 대하여도 제1항의 지원 사항을 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 적용할 수 있다. 청을 받으면 지원 대상에 해당 [본조신설 2011.5.30]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내진 성능 확인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방재청장 이 정하여 고시한다.

내진보강 지원 신청서

접수번호		접수일자			처리기	기간	30일		
	건축물 명			건 축 주					
	위치								
기H 시호	용도			건축면적					m²
기본사항	연면적		m	지상1층 바닥면적					m²
	지상1층고		m	층수		지하	층	, 지상	층
	구조형식			사용승인	일		년	월	일
	주요공법								
내진보강 관	시공기간				~				
련사항	시공사			대표자					
	내진성능 평가자			내진성능	확인자				
「기지케케리	I채버 제16조	OLOT	llost 미 가오 H	시해그차	비미아	이어테네	جلماا دد	1=1 010	ו ארט

「지진재해대책법」 제1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내진보강 지원을 신청합니다.

> 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 귀하

